

#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## 1. 개정 사유

가. 고등교육법 제6조(학교규칙)

- ① 학교의 장(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.
- ② 학칙의 기재사항,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나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(학칙)

-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·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\* 학칙 제·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

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, 학생의 신분변동,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

## 2. 개정 내용

제61조 (학칙의 신설 및 개정)

## 3. 주요 내용

제 61 조 (학칙의 제정 및 개정) 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 공고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관련 법령, 정관 등 상위 규범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개정
2.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 개정
3. 단순한 자구 수정,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

부칙

- ①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